



K-WCEB 2020

2020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워크

Korea-World Chinese Entrepreneurs Business Week 2020

참가기업 신청서



제 출 처

한·세계화상비즈니스워크 서울사무국

Tel : 02-6000-1521 Fax : 02-6944-8379

E-mail : kbccci@gmail.com

참가 업체 정보	회사명	국문: 영문:	대표자명	
	대표전화		주요 전시 제품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국문: 영문:	팩스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전화(핸드폰):
전시관 선택	☐ 스마트시티관 ☐ 신재생에너지관 ☐ 환경/수자원관 ☐ 스타트업 ☐ 통신/IT/물류관 ☐ 금융/지원/상생 ☐ 관광/K-콘텐츠관 ☐ H2WORLD(수소산업전분야) ☐ K-브랜드관(식품, 리빙 외) ☐ 기타			
부스 타입 선택		☐ 기본부스 (가로·세로·높이) 3×3×2.4m		☐ 독립부스(면적만 제공) (가로·세로) 3×3m
		상호간판 1식, 상담테이블(의자) - 1개(3개), 안내데스크(의자) - 1개(1개), 스포트라이트, 콘센트(2구) - 1개, 전기 - 1kW		전시면적만 제공 ※ 독립부스 자체 디자인 및 시공비 별도 발생 (참가기업 부담)
부스신청 내역	가격(VAT포함)	4,400,000원 / 1부스		3,300,000원 / 1부스
	신청부스 개수	() 개 부스		() 개 부스
	부스참가비	() 원		() 원
부스할인		- 30% : 사전등록 기간 내(8월 14일) 조기 신청 - 15% : 사전등록 기간 내(8월 31일) 신청 - 10% : 기본부스 6개 이상, 독립부스 8개 이상 신청 - 5% : 정부·지자체, 비영리단체 ※ 중복할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가비 납부안내		계좌번호 : IBK 기업은행 680-076181-04-024 / 예금주 : (사)한국부울경중화총상회 (문의처 : 055-716-1245-8)		

※ 신청비 규정

부스신청비 50% : 승인 기업 통보 후 7일 내 위 계좌로 입금

부스신청비 잔금 50% : 신청 후 30일 이내 위 계좌로 입금

(입금 후 입금 사본증 1부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 바랍니다. kbccci@kbccci.org/FAX. 0505-361-9189)

※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 후 안내

※ 해약 규정(환불내용)

개최 60일전: 총 참가비 50%

개최 60-30일전: 총 참가비 30%

개최 30일전-개최 전: 총 참가비의 0%

※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심사 후 7일 이내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귀사는 신청서 및 참가규정에 동의합니다.

신청일 2020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담당자 : (인)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2020 한·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K-WCEB 2020)』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 신청자를 말한다. “전시회”라 함은 상기명의 전시회를 말한다.
2. “주최자”라 함은 상기명의 전시회 주최기관 및 주관사를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및 계약)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고, 확정통보 후 본 전시회 참가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신청서와 전시내용에 따라 참가여부를 확정통보하고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회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4 조 (전시회장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은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없이 무단행위를 하는 경우 및 타사의 전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부스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회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제공되는 기본부스 및 시설물의 원상변형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치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참가비 납부)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주최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참가비는 주최자가 정한 시일 내 입금완료 하여야 한다.

제 6 조 (계약의 해지)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전시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전시자가 전시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시회 개시 30일 이전에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전시회 개시 전 30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전시회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 7 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사전에 전시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고지한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 조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 및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9 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전시회장내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회 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1 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회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